가족결합 영업보험료 할인 제도성 특별약관

제1조 (특별약관의 적용범위 및 효력)

이 가족결합 영업보험료 할인 제도성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적용대상은 사업방법서 별지에서 정한 상품을 가입하고, 정상적으로 유지중인 계약 중 가족결합 영업보험료 할인을 신청하는 계약에 한합니다.

제2조 (적용대상 세부사항)

① 이 특별약관은 각 계약별 계약자가 기본계약의 피보험자 본인을 포함한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하며, 이하 동일) 중 2명 이상이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및 효력)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족결합을 신청하고 회사가 승인을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② 제1항의 가족결합은 신청대상 계약의 피보험자가 가족관계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부모인 계약자가 2명 이상의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가족결합 신청하는 경우, 해당 피보험자들이 형제자매 관계임이 증빙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결합이 가능합니다.

③ 제1항의 가족결합 신청 시 회사가 정한 가족결합 신청을 위한 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또는 가족관계가 정확히 표기된 주민등록등본) 등 회사가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조 (보험료 할인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조(적용대상 세부사항) 제1항에 따라 가족결합이 승인된 경우, 승인일을 포함한 월의 익월에 해당하는 회차의 영업보험료부터 할인이 제공됩니다.

단, 회사의 승인일 이전에 납입된 영업보험료 또는 승인일 이전 기간에 대한 미납보험료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결합 영업보험료 할인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고, 가족결합 대상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계약의 피보험자는 가족결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가족결합 계약에서 본인 외 다른 가족의 사유로 변경이 발생하였으나, 여전히 2인 이상의 가족이 가족결합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족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고 가족결합이 유지됩니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보험료 할인율은 가족결합 대상 계약 영업보험료의 5.0%입니다.

이때, 영업보험료라 함은 실제 납입대상 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조건부 특별약관 적용으로 인해 할증된 보험료 및 유사암 납입지원 적용으로 인한 납입지원액은 제외됩니다.

④ 가족결합 대상 각 계약별 기본계약 납입기간 이후에는 가족결합 영업보험료 할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계약을 따릅니다.